

8. 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 교육수련위원회 규정

제정 : 2011년 1월 17일
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규정 제 9호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(이하 '학회'라 한다) 회칙의 규정에 의거한 학회산하 교육수련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역할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역할)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을 그 역할로 한다.

1. 예방치과 전공의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업무
2. 예방치과 전공의 교육과 관련한 학회 업무 및 외부 연계업무
3. 예방치과 전문의 자격시험 문항개발 및 출제에 관한 업무
4.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보건학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업무
5. 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
6. 기타 교육수련에 관한 업무

제3조 (구성)

- ① 본회는 1인의 교육수련위원장과 6명 내외의 교육수련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교육수련위원장은 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의 교육수련이사가 겸임한다.
- ③ 교육수련위원은 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의 평생회원으로서 교육수련위원장이 추천하고,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
- ⑤ 위원의 유고 시 잔여 임기 동안 교체위원을 위촉한다.

제4조 (대외업무)

- ① 본회의 위원 중 교육수련위원장이 추천한 1인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치과의사협회 수련고시위원으로 추천한다.
- ② 본회의 위원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출제위원을 겸한다.

제5조 (회의)

- ① 본회는 학회장,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에 의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6조 (재정) 본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회에서 부담할 수 있다.

제7조 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대한예방치과·구강보건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.

<부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